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 보고

의안 번호	1240
----------	------

2020년 2월 27일
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월 13일, 정진철 의원 외 9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20년 1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2020년 2월 27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진철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여객 시설 및 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전자에 대한 상시적 음주점검체계가 없는 실정임. 이에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시장에게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책무를 부과하고, 교통법규위반

과 교통사고 및 특별교통수단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안전운행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도록 운전자 준수사항을 법제화하여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 및 특별교통수단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안전운행체계를 신설함(안 제14조제2항)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휠체어 이용자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수행해야하는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 2. 04 ~ 2020. 2. 11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원안동의
-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상시 음주측정시스템 도입(4개소 시범 설치) 및 난폭운전 예방교육(월 1회, 반장회의)을 시행하고 있으나, 점검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제화를 통해 안전운행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가 훨체어 이용자의 탑승 시 고정장치 체결 및 안전띠 착용을 돋고 있으나, 승객에 대한 안전운송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운전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4. 검토보고 요지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한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에 대한 점검 등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이용자 안전을 위해 훨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체결을 확인하도록 하는 준수사항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¹⁾의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과 관련한 시장의 점검의무 및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 특별교통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8."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훨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수단 이용자 안전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사안을 규정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사업은 2016년 서울시 ‘민간위탁 혁신계획’²⁾에 따라 대행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동 계획에 근거하여 서울시와 시설공단은 2017년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협약서’(이하 “협약서”)³⁾를 체결한 바 있고, 현재 시설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음
-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 제4조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등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근 음주운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만큼 시장이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참고로 시설공단은 자체적으로 장애인콜택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지만 상시적인 단속체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며, 2019년도에 부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음주운전 단속에서 실제 적발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2) ‘민간위탁 혁신계획’_조직담당관-8252: 1.공단 사업 전체 민간위탁 → 「대행」으로 전환 2.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배제 3.신규위탁·재계약 절차 합리화 4.市 예산과목 변경(민간위탁금 → 민간대행사업비) 5. 협약기간 확대(3년 이내 → 5년 이내)

3)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협약서’: “시”가 장애인 콜택시의 관리·운영을 “공단”에게 대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권리·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대행기간은 2017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5년)까지로 긴급한 사정이나 지연된 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정 가능함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장애인콜택시 음주운전 단속현황〉5)

(단위 : 회, 명)

구 분	2017		2018		2019	
	시행횟수	적발인원	시행횟수	적발인원	시행횟수	적발인원
부서자체 음주운전 단속건	7	1	6	0	6	0
감사실 음주운전 단속건	2	0	0	0	6	1

- 이에 따라 시설공단은 2020년 '장애인콜택시 음주측정시스템 도입계획'6)을 마련하여 차량 20대 이상의 대형차고지 4개소(월드컵·창동·수서·면목)에 음주측정기 4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효과분석을 통해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해당 도입계획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또한,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가 해마다 평균 약 100건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의 난폭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임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7	2018	2019
교 통 사 고 (가 해)	101	96	98

-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게 휠체어 고정장치 체결과 안전띠 착용에 대한 확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현재 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업무 매뉴얼'에서도 일부 규정7)하고

5) '장애인콜택시운영처-835호'(2017.02.17.) _ 자체 적발대상(1건) : 운전 전 음주측정 결과, 0.03% 미만 수치 적발 "훈병" 조치
 「2017~2019 공직기간 확립 추진계획」 _ 감사실 적발대상(1건) : 운전 전 음주측정 결과, 행정처분 (0.03%) 미만 수치 적발 "신분상 경고" 조치

6) '장애인콜택시 음주측정시스템 도입계획' 장애인콜택시운영처-763

7)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업무 매뉴얼' 2. 업무절차별 응대요령(고객 맞이 시): 휠체어 안전고리 및 안전벨트 체결 후 이동 안내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선 현장에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협약서 제8조8)에서는 시설공단은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실제 현실에 반영되어 장애인콜택시 이용안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협약서’ 제8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공단”은 사업을 수행 또는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시”의 관계법규, 고시, 지침 및 이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동안 해당 법령 및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등을 포함하여 준수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 및 특별교통수단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생략) <u>〈신설〉</u>	① (현행과 같음) <u>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 및 특별교통수단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u>
② (생략) <u>〈신설〉</u>	③ (현행 ②와 같음) <u>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훨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전 훨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훨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
③ (생략)	⑤ (현행 ③과 같음)
④ (생략)	⑥ (현행 ④와 같음)